

삼척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

의안 번호	27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'96. 2.

제출자 : 삼척시장

1. 제안이유

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,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사항 및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학계, 언론계 또는 관련단체, 관련공무원 지역주민 대표등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(안제2조)
- 나.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은 국민건강증진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, 제도에 관한 사항,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등으로함(안제3조)
- 다.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(안제4조)
- 라.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, 공무원인 회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함(안제5조)
- 마.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 1인을 두도록 함.
(안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따로불임

삼척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

제 1조 (목적) 국민건강증진법 제 10조와 규정에 의거 삼척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구성) 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회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.
②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.
③ 회원은 학계, 언론계, 지역주민대표 또는 관련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제 3조 (기능)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
1. 국민건강증진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
3.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

제 4조 (회의) ① 회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.
② 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.
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5조 (임기)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회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, 보궐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 6조 (수당 및 여비)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"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"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7조 (간사와서기)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둔다.
② 간사는 가족보건계장이 되고, 서기는 담당직원중에서 임명한다.

제 8조 (운영 세칙)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